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의 정의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포함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3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영화의 정의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포함(안 제2조, 제3조의11 신설 등)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8.

다. 회 부 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이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유통 구조가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12호의2).

다만,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제와 영화업자 신고 의무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영화업 신고 의무와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안 제3조의11 신설 및 제26조).

한편, “영화”의 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기존의 유통매체(영화상영관,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을 상영등급분류, 그 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에 보다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

아울러, 영화 부과금이 영화상영관 입장시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한편, 한국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기금의 용도에 명문화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영화의 정의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포함(안 제2조, 제3조의11 신설 등)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시키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하여는 기존 영화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및 신고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며,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11 등).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	제2조(정의)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u><단서 신설></u> ②·③ (생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u>상영 전까지</u>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u>비디오물을</u>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	② 제1항제13호----- ----- ----- -----.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 ----- ----- ----- ----- -----. <u>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될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 -----<u>영</u> <u>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u> <u>에서의 상영 전까지</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u>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를 포</u>

현행	개정안
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u>공급하기 전에</u>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 ⑦ (생략)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u>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u>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u>함한다)</u>----- ----- <u>제공하기 전에</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 ----- ----- ----- ----- <u>온라인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한다)</u>----- ----- <u>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기 전에</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겨 기계장치 등에 의해 재생되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구분하여, 해당 업자의 신고의무 등 규제 및 등급분류 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하여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규율하고 있음.²⁾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함)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영화산업의 매출이 영화상영관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영화관 개봉과 동시에 또는 비교적 단기간 내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영화 유통 방식과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와 영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 2) 현행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OTT(Over The Top)’의 급성장을 반영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OTT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한 현행법이 2023. 3. 28.부터 시행 중에 있음.

화상영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된 영화 간의 구분이 점차 의미를 잃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 제2조제1호는 ‘영화’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를 포함시켜,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도 현행법상 ‘영화’의 범주에 포섭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개념 간의 차이를 완화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 제3조의11은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하여는 기존 영화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신고의무 및 일부 규제의 적용(현행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³⁾을 배제하여 영화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

의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제 부담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개정안 제25조제1항 단서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화의 범위에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함에 따른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수입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를 확장하되,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기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 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같이 유통 매체(영화상영관,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상영 영화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 간의 등급분류 체계를 현행 틀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바, 이 또한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25조제1항제12호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⁴⁾

4) 참고로 현행법하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사업으로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외국 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

○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26년 사업 종료)

(단위: 백만원)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324	영화진흥위원회	○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내 현금 지원 - 영화 1편, TV시리즈 1편 지원
‘24년	1,024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공동제작영화 및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내 현금 지원 - 공동제작 영화 1편, TV시리즈 3편 지원
‘25년	896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공동제작영화 및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5% 범위내 현금 지원 - 공동제작 영화 3편, TV영상물 시리즈 1편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26년 신규 추진)

(단위: 백만원)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6년	3,000	영화진흥위원회	○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하는 국제공동제작영화에 대해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순제작비의 50%까지 지원 - 영화 6편 제작 지원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를 “연속적인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 규정만으로는 영화와 그 밖의 영상콘텐츠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제작 관련 협회 등에서는 기존에 방송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율되던 다양한 영상콘텐츠까지 ‘영화’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바,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개념 구분 기준과 이에 따른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의 확산 등 영상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법상 ‘영화’의 정의가 산업 현실 및 사회적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정의를 재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의 정의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사적 완결성을 지닌 다양한 영상콘텐츠까지 포섭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할 때 정의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 대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 제3조의11 신설과 관련해서도 기존 영화제작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3조의9의 ‘영화업자’⁵⁾를 ‘영화제작업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이 영화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까지 확대할 경우, 현행 법상 ‘온라인비디오물’ 및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과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서사적 완결성’,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 등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영화와 그 밖의 영상콘텐츠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 적용 범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현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는바, 개정안 시행 시 방송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영상콘텐츠까지 영화의 범주에 포함되어 중복 규제 또는 개념상 혼선이 발생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추가적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콘텐츠웨이브(주)와 같은 일부 민간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영화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까지 포섭할 경우, 기존에 방송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율되던 영상콘텐츠와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법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서사적 완결성’ 등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드라마, 숏폼·웹콘텐츠 등이 영화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적용 범위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타 부처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25.1.16.)	< 현행 유지 > • (입법목적 불분명) 개정안과 같이 영화의 정의를 변경할 경우, '영화'와 '온라인비디오물'*과의 차이를 알기어렵고, 정의의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부족 * 現 영비법의 "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 ** 영화의 정의 요건인 '서사적 완결성', '적합한 형태'는 영화 이외의 많은 동영상 콘텐츠 해당 가능 - OTT 영화를 영화의 영역에 포함하였음에도 정책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 영화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나 입법 목적이 불분명 • (중복규제 가능성) '영화'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까지 포함하게 되어 영화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우려* * 「방송법」의 규율을 받는 다큐·단막극 등의 방송프로그램이 OTT를 통해 제공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에 포함되어 개념의 상충 및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OTT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로 규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령간 중복규제 可 - 이용자가 OTT로부터 제공받는 효용은 방송과 유사하다고 인지*되고 있어, OTT를 통해 창출되는 미디어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를 일괄하여 아우를 수 있는 미디어통합법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률('24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OTT 이용자의 61.2%가 OTT가 유료방송과 유사하다고 응답 • OTT 이용자의 38.7%가 유료방송을 대체할만한 OTT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 • (OTT와 영화의 대체성) 본 개정안은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를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OTT에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OTT콘텐츠와 영화가 동일한 것은 아님 - 영화진흥위원회의 소비자 대상 조사* 시에도 영화의 극장 외 관람방법 중 하나로 TV채널, 블루레이 등과 더불어 OTT를 제시하고 있어, OTT는 상영 영화와 유사성보다는 대체성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출처> 「2023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중 "영화 관람 방법별 만족도 조사" - OTT 콘텐츠는 영화·드라마 등에 국한되지 않고 탈장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따른 일부 유사성을 근거로 OTT 영화를 일반적인 영화로 단정지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장편영화를 시청에 용이하도록 20~30분 단위로 분할하여 제공하는 미드폼 콘텐츠·숏드라마의 등장, OTT·TV채널 등 매체를 넘나드는 멀티플랫폼, 영화·시리즈물 간의 장르 융합 콘텐츠의 등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5.1.19.)	< 신중 검토 > • 영화의 범위에 OTT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브이로그, 숏츠 등의 영상물과 방송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률적용의 혼란 및 추가 규제의 우려 있음 * "방송법 제2조(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서사적 완결성',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영화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려우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될 수 있음 - 3부작으로 연속된 작품의 경우 개별 작품이 영화로 인식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완결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영화로 분류되지 않음 - 여행·일상 브이로그도 시작, 전개, 결말의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로 분류될 우려 있음 •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현재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비디오물로서 규제를 받고 있으나, 개정 시 동일 영상에 대해 영화와 비디오물의 두가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개념의 상충 및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정의)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 OTT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율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영화업자로서 현재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한국영상자료원에 영화필름 등의 제출 의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 노력 등의 의무를 추가 부여 -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결국 표준보수 지침의 준수, 근로조건 명시, 안전사고 예방조치, 영화산업 실태조사 등 다수 규제가 OTT로 확장되어 규제가 대폭 강화될 수 있음 - 글로벌 경쟁하는 OTT에 대해 최소 규제를 견지해온 정부의 진흥정책 방향과도 배치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기획예산처 (25.1.22.)	< 현행 유지 > • 제25조제1항 개정 실익이 낮음 - 필요시 현행 제3호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30억원* 기반영 * 6편 × 5억원 = 30억원 •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을 위한 영화·영상로케이션 지원은 집행률 저조 등으로 부처 자체 지출구조조정 → '26년 폐지 -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다시 편성 가능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26.1.13.)	• 개정안 제2조(정의)가 광범위하여 영화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 야기 우려 ○ 현행 영화비디오법상(제2조 제12호의2)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영화로 포섭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 “영화”에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 *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등 일반인이 제작한 콘텐츠도 영화의 개념에 포섭됨 - 일반 국민이 “영화”에 상기 콘텐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큰 혼란 초래할 수 있음 ○ 추상적 용어 사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요소는 제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 다수의 정부 부처도 영화의 정의를 확장하여 OTT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힌 바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영화가 OTT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극소수에 해당하고, 영화의 유통창구로서 영화관은 여전히 유의미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제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중복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영상물과 방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큰 혼란 우려 입장 ▲영화와 OTT는 기본적 성격과 규율체계가 상이하므로 영화로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정의·규율하는 것은 부적합 ▲현행법의 영화 대상 규제가 OTT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OTT에 대한 최소 규제를 견지해 온 정부 입장과 배치 ○ 해외 주요국도 영화와 다른 영상물을 구별 정의하며,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음 - 독일: 상영시간 기준으로 영화를 구분, OTT 서비스를 ‘비디오 주문형 서비스’로 별도 정의 - 프랑스: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장편/단편영화 구분, 극장상영 조건 부여 •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영화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에 확대하는 결과 초래 ○ 다양한 콘텐츠에 현행법상 영화에 적용되는 규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 * 영화필름등의 제출 의무(제35조), 등급분류(제50조) 등 ○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확대 적절성 검토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신중 검토되어야 할 것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26.1.13.)	• 제2조제1호의 '서사적 완결성' 문구 전면 삭제 - '서사적 완결성'이라는 표현은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 '완결'된 서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심의기구나 행정 관청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있음 -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르지 않거나 서사가 파편화된 영화의 경우 '서사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 '영화'의 지위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콘텐츠가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영화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이나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해당 문구의 모호함은 결국 현장의 제작자들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 제2조제1호의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 문구 전면 재검토 - 영화법의 핵심인 '공중의 관람' 가치를 유지하여 산업적·법적 정체성 보호 • 제3조의11 신설조항 수정 * 수정: 제3조의11(적용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는 모든 영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 동일하게 법적 '영화'를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OTT 전용 영화 제작 환경의 근로자들은 해당 법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망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정은 영화산업 전반의 공적 책임과 운영 기준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온 핵심 조항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특정 제작·유통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방적 특례를 고착화하여 산업 내 형평성과 제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노동권 보호, 성평등 및 다양성 관련 정책이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단서 조항 수정 * 12. 해외 영상물의 국내 제작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다만,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은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제작자로 참여하거나 국내 인력 및 인프라 활용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2호는 유통 플랫폼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고 있어 OTT 영화가 법적으로 '영화'지위를 획득하고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까지 받게 됨에 따라 제작역량이 OTT 시장으로 치우칠 수 있음 -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 강화는 글로벌 OTT 및 대형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독립 영화나 소규모 제작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제작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에 연간 기금 집행액의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정된 기금 자원 내에서 국내 영화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던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영화발전기금이 해외 영상물 유치 등 플랫폼 중립적인 사업에 쓰이면 부과금의 원천인 상영관용 영화 제작자들이 느끼는 정책적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소외감이 커지며, 정의 확대에 상응하는 제도 적용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산업 전환기 현실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대상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보완 검토가 필요 • 제26조제1항 단서 조항 삭제 - 동일하게 '영화'를 제작·배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화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신규 OTT 영화 제작·배급업자에게는 면제되는 구조는 산업 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상영관 개봉 영화 제작자는 엄격한 신고 및 변경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지는 반면, OTT 영화 제작자는 행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정부의 산업 통제 파악이나 체계적인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제도적 불균형이 고착될 우려가 있음 •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전면 재검토 - 영화의 정의를 확대하되, 등급분류 체계를 기존 유통매체별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방향은 제도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OTT 영화가 '영화'로 포함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하위 지침 등을 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OTT)를 통해 먼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가 동일한 내용으로 상영관에서 개봉할 경우(재편집, 추가 촬영 없이 플랫폼만 변경될 경우), 기 심사 등급의 효력 인정 범위 및 심사 방법에 대한 하위 지침 마련 후 상영등급분류(영등위 직접 심의)와 온라인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 포함) 사이의 혼선 방지 필요 ** 상영관용 영화 심사 기준과 OTT 자체등급분류 기준 간의 괴리가 '등급 쇼핑(유리한 플랫폼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등위가 OTT 자체등급분류 결과와 상영관 영화 심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특정 주체(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매체 간 심사 결과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공통 심사 표준 지침 마련 필요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26.1.14.)	•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추가 * 다만, 회차별로 구성된 연속적 영상콘텐츠(시리즈물), 시즌제 드라마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는 콘텐츠는 제외한다. - 개정안의 '영화' 정의는 OTT 오리지널 드라마, 시즌제 시리즈, 회차형 콘텐츠와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사적 완결성'이라는 개념은 드라마의 시즌 단위나 에피소드 단위(단막극)에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해석에 따라 연속적 드라마 콘텐츠가 영화로 간주될 소지가 있음 - 회차별 제작 방식과 편성 구조를 가진 드라마 콘텐츠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과 과도한 규제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 - '영화'의 법적 정의를 정비함에 있어 연속적 회차물(시리즈), 시즌제 시리즈, 방송 및 OTT 오리지널 드라마는 법률상 '영화'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문으로 명확히 해야 함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 (26.1.15.)	• 제2조제1호의 '서사적 완결성' 및 '공중 관람 적합성' 문구 전면 삭제 및 수정 제안 * 대안: 영화의 정의는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이라는 유통 및 배급의 목적성만을 요건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함(예: "연속적인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 미학적 기준의 법제화(서사적 완결성): '서사(Narrative)'는 비평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법에 명시할 경우 비서사(Non-narrative) 예술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영화의 범주에서 배제될 위험이 큼 ○ 검열 기제로의 오용 가능성(관람 적합성):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라는 모호한 표현은 기술적 규격을 넘어 내용적 심사(윤리성, 정치 성 등)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과 충돌함 ○ 영화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부정: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거의 무성영화, 현재의 실험영화, 미래의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영화의 다양성과 변화,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제3조의11 신설조항 삭제 ○ 차별을 명시하는 대기업 특혜 입법 - 극장용과 OTT용 영화 모두(드라마제작사가 아닌) 기존 영화 제작사가 제작하며,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등 제3조의2~10까지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기존 영화제작사가 OTT용을 제작할 때 준수하기 어려운 사유는 달리 없음. 이런 이유로 영화인 연대 모든 단체가 해당 사항의 면제 조항 삭제를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임 - 기존 제작사 및 소속된 사용자단체도 수용하지 않는 해당 면제 조항은 OTT 플랫폼 대기업만을 위한 특례로 보이고 전체 영상산업 지형변화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영화 중심의 산업계도 아닌 지속적 성장 중에 있는 OTT 플랫폼을 위한 특혜일 뿐이며 극장용 프로젝트가 OTT용보다 제작 예산상 좋은 환경도 아님 ○ 헌법, 법 적용 및 판례의 충돌 - 3조의2부터 3조의10의 내용을 특정하여 적용 유예하는 것은 헌법, 근로기준법, 판례 등과 충돌함 -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 등 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착오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 영화스태프는 감독급을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으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영화제작 현장, 주52시간제 근무 활용 안내(2021.12)」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OTT 영화에 대해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 사이를 면제시킴으로써 기존의 판례와 법률(근로기준법 등)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착오를 불러올 수 있음 * 「2019도9688 대법원 판례(2019.10.17.)」, 「2020도17547 대법원 판례(2021.02.02.)」 - 현재 결정*에서도 해당 조항이 영화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함 - 최고 기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개정으로 '적용 제외'를 시킨다면, 현재 결정과는 반대의 의미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처럼 작동될 것임 * 「2018헌바514(2022.11.24. 선고)」: "심판대상조항(제3조의4)은 "특히 취약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밝힘 ○ 사실과 다른 영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마치 ‘OTT용 영화’를 영화비디오법 내에 시급히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조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 또는 유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개정안에 없으며 오히려 현 상태를 악화시키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문체부 내 정책 방향 불일치 -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은 OTT 제작에서도 영화에 서처럼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지만, 현상 유지도 아닌 그 반대로 면제시키는 내용이며, 개정안이 주무 부처에서 충분히 숙고 되었는지도 의문임 ○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개정 - 현재 임금체불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 개정안 추진하여 고의적·상습적 체불의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원청 책임 인정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정책에 역행하는 OTT 대기업 특혜 입법임 •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조항 수정* *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한”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극장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국산 영화의 제작·유통 지원”으로 명문화하여 국산 OTT 영화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산업 현실 외면: 이미 영화 향휴의 상당 부분이 OTT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장용 영화만 지원하는 것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 초래 • 제25조제1항 12호 신설 조항 수정 * 수정: 해외 공동제작의 국내 제작자 및 제작사 지원 ○ 국내외 콘텐츠 역차별: 해외 자본이 투입된 영상물은 지원하면서 국내 창작자가 만든 OTT 영화는 극장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심각한 모순 발생 • 제25조2(부과금의 징수) 조항 확대 신설 ○ 지원과 부과금 징수는 극장용 영화처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다만, OTT용 영화에 대한 과금 기준은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 • 제26조제1항 현행 유지 ○ ‘영화’를 제작·배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화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신규 OTT 영화 제작·배급업자에게는 면제되는 구조는 산업 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상영관 개봉 영화 제작자는 엄격한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지는 반면, OTT 영화 제작자는 행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정부의 산업 통계 파악이나 체계적인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면제가 장기화될 경우, 제도적 불균형이 고착될 우려가 있음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독립 영화협회 (‘26.1.16.)	• 제2조제1호 수정 * 수정: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연속적인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 과거의 무성영화, 현재의 실험영화, 미래의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영화의 다양성과 변화, 발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사적 완결성’: ‘서사’는 비평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법에 명기할 경우, 비서사 예술 영화,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영화의 범주에서 배제될 위험이 큼 -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 기술적 규격을 넘어 내용적 심사(윤리성, 정치성 등)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제3조의11 신설조항 삭제 - 극장용 영화와 OTT용 영화의 제작 환경은 인력, 장비, 노동 강도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플랫폼의 차이를 이유로 노동 안전 및 성평등, 권익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산업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을 부추길 수 있음 •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1항 신설 단서 조항 삭제
배급사연대 (‘26.1.16.)	< 신증 검토 필요 > • 제2조제1호 수정 * 수정: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 현행 영비법의 영화는 극장 영화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고, 개정안은 극장, IPTV, OTT만을 포괄함. 새로운 영화의 정의는 현행 모든 영화 원도(극장, 홈비디오, IPTV, OTT, 방송채널)와 미래에 등장할 원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되면 좋겠음 ○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장치에 담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현재 영화는 저장장치를 기준으로 필름, 디스크, 외장하드의 3가지 형태로 제작 및 유통되고 있음 * 필름: 신작이 제작되는 일은 드물지만, 고전영화가 여전히 필름 형태로 남아 있고, 극장이나 영화제 등에서 기획전 등의 형식으로 상영되고 있음 - 디스크(홈비디오): 시장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영화 DVD, 블루레이가 제작, 유통되고 있고, 관람 및 소유 방식의 특이성과 유일한 물리 매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듯함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외장하드: 극장 IPTV, OTT, 방송 채널 영화의 제작형태이며,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가 MPEG 파일로 제작된 후 외장하드에 담겨 극장에 배송되고 있으며, IPTV, OTT, 방송 채널의 경우 MPEG 파일 또는 MOV 파일로 제작된 후 외장하드에 담겨 방송사에 택배로 제공 - 수정안의 "필름"은 극장용 영화를 의미하고, "디스크"는 홈비디오(DVD/블루레이)를, "디지털 저장장치"는 IPTV, OTT, 방송 채널로 가는 외장하드 및 미래에 등장할 저장장치를 의미함(매체를 기준으로 한 표현) -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는 극장 상영을 의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된 것"은 IPTV, OTT 방영을 의미함(상영 방식에 따른 표현) - 매체의 형태 또는 상영 방식 중 한가지로만 영화를 정의하면 현행 모든 영화의 형태를 포괄하기 힘들며,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를 정의함으로써 현행 모든 원도와 미래에 등장할 원도까지 포함되도록 제안함 ○ 개정안의 "콘텐츠" 문구 - 영화와 같은 영상물 외에도 출판, 전시, 공연 등 포괄 범위가 광범위하여 영화를 정의하는 용어로 부적합해 보임 ○ 수정안의 "저작권" 문구 - 현행 영화의 정의에도 쓰고 있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나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콘텐츠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보임 ○ 개정안의 "서사적 완결성" 문구 - 시리즈물과 구분하기 위해 넣은 문구로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영화의 범위를 한정하므로 기대효과의 구현보다 역효과가 커 보임 ○ 개정안의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 문구 - 영화의 정의에 꼭 필요한 구성요건은 아닌거 같으며, 적합하다는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검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수정안의 "다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단서 문구 추가 - 게임이 영화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내용 면에서 영화를 게임물과 구분하여 정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게임물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영화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제3조의11 신설조항 삭제 ○ 제작 단계에서 극장용 영화가 될지, OTT 영화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많으므로 신설 조항은 영화 제작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근로 감독에 관한 규정을 희석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큼 - OTT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에게 제작업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기금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 수준에서 OTT 영화 및 제작사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 감독조합 (26.1.16.)	• 제2조제1호 수정 없음 - 창작자(감독·작가)의 입장에서, 종전에는 동일한 ‘영화’ 더라도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지 OTT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다른 문제가 있었으나,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방향성은 바람직함 - 다만, OTT 영화를 ‘영화’의 정의 조항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계약·크레딧·2차적 이용 보상 등 실질 권리 개선이 자동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속 입법·제도(표준계약/보상권/분쟁조정 등) 연계가 필요함 • 제25조제1항 현행 유지 -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OTT 영화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기금이 일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성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OTT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OTT는 제작·유통의 핵심 플레이어이므로 OTT 영화 지원을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를 대상으로 재원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걷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 • 제25조제1항 12호 신설 조항 수정 의견 * 수정: 국내 제작자가 해외 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국제공동제작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개정안은 국내 창작자의 권익과 무관한 해외 OTT·메이저 스튜디오의 국내 촬영·제작 서비스까지 기금 지원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제안함 • 제26조제1항 신설 단서조항 수정 * 수정: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될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 및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 OTT를 ‘영화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26조 단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의 제작·배급을 영화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영화 제작·유통의 주요 주체가 된 OTT 사업자를 영화산업 관련 제도 전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현실과의 괴리가 크고 영화발전 기금 조성, 창작자 보호, 산업 통계 관리 등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므로 OTT 사업자에 대해서도 영화업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26.1.16.)	< 신증 검토 필요 > • 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라 OTT 유통 콘텐츠도 ‘영화’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화 콘텐츠에 대한 정책 일원화 및 향후 정책에 대한 초석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취지가 이해되나 개정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영화의 동일한 법적 지위 속에 차별적 규제 형평성으로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 우려 있음 * 영화업제에 대한 규제와 신고의무 적용 제외 관련 사항(개정안 3조의11 적용례), 콘텐츠 등급분류 의무 및 유통업자에 대한 의무사항(한국영화 상영의무, 영화 발전기금 납부 의무,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등) - 사실상 극장용 영화와 OTT 영화를 구분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의무는 없고 영화라는 범주에 속함에 따르는 권리만을 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OTT에서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영화, 시리즈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이 모두 영화의 범주로 표현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월드 (26.1.7.)	• 이견 없음 -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이견 없음
콘텐츠웨이브 (주) (26.1.14.)	< 입법반대 > • 영화에 대한 통합적 정의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화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 - OTT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 예능 등도 영화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 및 중복될 우려 있음 - 극장상영을 전제로 한 영화와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은 기본적인 성격과 규율체계가 상이 • 영화 대상 규제가 향후 OTT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OTT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제3조의11(적용례) 신설은 상영관 등에 상영하는 영화로 규제를 한정하고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범위에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제25조(기금의 용도)는 상영관 등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서만 기금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는 상영관 등에 상영하는 영화업자만 신고 대상으로 한정하고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입법을 통해 신고 범위에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영화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 조항에 따른 법 적용 모순이 발생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참고 2

해외사례

국가명	내용
호주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 영화 개념 정의 - 1995년 호주연방(출판, 영화 및 컴퓨터게임) 등급분류법 - '영화(film)'는 영화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와 컴퓨터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각 이미지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 단 (a) 컴퓨터 게임이나 (b) 출판, 영화, 컴퓨터 게임용 광고는 제외한다.
캐나다	- 1985년 연방 영화법 - '영화(film)'는 활동사진(motion pictures), 스틸사진, 사진 디스플레이, 필름 스트립 및 주로 사진이나 사진 재현(reproductions)으로 구성된 기타 시각적 재현(visual presentation) 형식을 의미한다.
싱가폴	- 싱가포르 영화법 - '영화'란 (a) 영화관 영화(cinematograph film) 또는 비디오 녹화물(video recording); (b) 비디오게임; 또는 (c)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한 (제(5)항에 달리 제공된 경우 제외) 시각 동영상(moving visual image)을 (사운드트랙과 함께) 생성하고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녹화물(recording)

(자료: 문화체육관광부)